

2020년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5. 15.(금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최승수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재화 위원, 박정인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4건(안건번호 제2020-25371호~25430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본 사건은 웹하드 사이트(♣♣♣♣, ♣♣♣♣ 등)에 불법복제물 (영화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
- B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20년 공개된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, 예컨대 영화 헌트(2020), 영화 엠마(2020), 영화 온워드 : 단 하루의 기적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- C 위원: 본 심의 대상 제2020-25371호~제2020-25430호의 60개 안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영화 저작물 64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.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.
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25371호~25430호(64건의 게시물)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5. 15.

분과위원장 최승수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